

## II. 자연재해보험제도 현황 및 시장전망

### 1. 보험제도 현황

- 자연재해보험<sup>1)</sup>이란 정부의 주요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발된 정책보험으로,
  - 보험료 및 운영경비의 지원, 국가재보험에 의한 책임분담 등의 보험제도를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특징이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과수작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풍수해보험은 2005년 시범사업실시를 준비 중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의 50% 및 운영경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 일정손해율을 초과하면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방식(Stop Loss Ratio 방식) 등에 의한 국가재보험 도입을 검토 중임

<표 2>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 제도 도입 현황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도입 준비중)
근거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가칭)
보험의 목적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비닐하우스, 축사
가입방식	임의가입	지자체 일괄가입 또는 주민 임의가입
운영주체	농협/보험회사	검토중
정부지원	순보험료 50%, 사업비 전액	검토중
보상방법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설정	피해규모별 정액보상
위험분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준비중	국가재보험제도를 전제로 검토중

1) 기도입·운영중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축공제와 도입·검토 중인 양식보험, 중소기업 자연재해보험 등도 광의의 자연재해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시장성이 크고 기도입 또는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함

## 2. 시장전망

### 가. 시장규모

□ 정부의 확대정책에 의하여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장기적으로 2조 5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될 것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 규모는,
  - 2004년 330억원에서 2013년 2천 1백억원으로 증가하고,
  - 장기적으로 6천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풍수해보험의 순보험료 규모는,
  - 2005년 시범사업 실시시점에서는 500억원에 불과할 것이나,
  - 보험대상에 주택을 추가하게 되면 1,200억원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1조 9천억원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표 3>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예측

구분	단기	중기	장기
농작물재해보험	330억원	2,100억원	6,100억원
풍수해보험	500억원	1,200억원	1조 9,000억원

- 주) 1. 단기에측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3년 순보험료이고, 풍수해보험은 비닐 하우스 및 축사의 전국규모 시범사업을 가정한 순보험료 추정치임  
 2. 중기에측에서 농작물은 품목확대계획안(표5)이 완성되는 2013년 기준이고, 풍수해보험은 주택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될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장기에측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보험으로 확대되는 시점, 풍수해보험은 무상복구비 지원대상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음

#### ○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 농작물재해보험은 국제적으로 보조금금지 예외로 인정(green box)되는 제도로 미국 농작물보험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함
- 풍수해보험은 해당국의 자연재해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조원 또는 수천억원의 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표 4> 주요국의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sup>주1)</sup>	14,947억원 (1,444억엔)	39,474억원 (34억달러)		-	4,005억원 (2.7억유로)
풍수해보험 <sup>주2)</sup>	지진보험 5,282억원 (508억엔)	홍수보험 21,984억원 (19억달러)	지진보험 3,468억원 (3억달러)	풍수해보험 11,521억원 (8.13억유로)	-

주) 1. 일본, 스페인은 2002년, 미국은 2003년 순보험료 기준임

2. 일본 및 미국(지진보험)은 2003년 순보험료 기준이며, 미국(홍수보험)과 프랑스(풍수해보험)는 2001년 영업보험료 기준임

## 나. 시장확대

□ 자연재해보험은 지속적인 대상목적물의 확대가 예상되며, 보험가입률의 상승, 보상수준의 상향 등에 의한 보험확대가 추가될 경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최근 경제장관간담회(2004. 6. 18일)에 보고된 「대상작물 확대 계획(안)」에서는 2013년까지 대상작물을 30개 작물로 확대

<표 5>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 확대계획(안)

년도	품 목 명			
	보험준비	시범사업 1년차	시범사업 2년차	전국 확대
2004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5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6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2007	고추, 맥류, 난류, 장미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수도작, 시설작물 (토마토, 딸기, 수박)
2008	마늘, 양파, 감자, 느타리	고추, 맥류, 난류, 장미	시설작물(무, 배추, 풋고추, 메론)	인삼, 시설작물 (참외, 오이, 호박)

자료) 경제장관간담회 보도자료(2004년 6월 18일)에 의한 확대계획이며, 연도별 세부확대계획은 농림부 내부자료 내용임(2008년 이후 세부확대계획은 농림부에서도 미확정 상태임)

- 농작물재해보험은 장기적으로 **농업보험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작물(수도작), 가축, 과수, 밭작물, 원예시설 등을 농업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자연재해보험은 일본 농업공제의 대상과 현행 자연재해 무상 복구비지원 대상전체(공공시설물, 농경지 등 포함)를 궁극적인 대상목적물로 하고 있음

- 다만, 정부부처간 소관업무, 관련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험제도의 담당 및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 대상시설물별 소관부처 및 보험제도 전망

대상시설	소관부처	보험제도
일반시설 (주택)	소방방재청	o 풍수해보험(시행준비)* - 축사,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준비중 - 주택,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대 가능 ⇕ 연계가능
농업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농림부	o 농작물재해보험(시행) ⇒ 농업보험으로 확대 예상

\* 소방방재청에서 법률제정준비 등 구체적으로 제도도입을 준비중에 있음

o 보험가입률은 보험제도의 개선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의 안정화<sup>2)</sup> →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액보상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규모는 추정액 대비 5배~6배<sup>3)</sup> 더 커질 수 있음

2) 자연재해위험은 국가재보험의 도입으로 손보사의 손해를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보험실적이 축적되면 좀 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3) 현행 풍수해보험의 보상수준은 무상복구비의 100%(실제손해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평균 20%~30%))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실손전부보상기준으로의 전환을 가정한 효과임

## 다. 보험제도 개선

- 자연재해보험의 현행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 자연재해보험 제도적 요건 충족 검토

구분	제도적 요건	현행		개선 가능성
		농작물	풍수해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시장 육성정책 추진</li> <li>□ 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 시장 변화에 대응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li> <li>□ 보험료 보조 등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li> </ul>	중	고4)	가능
위험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보험제도 도입</li> <li>□ 보험회사와의 재보험거래 안정성 확보</li> </ul>	저	중	가능
가격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가격 결정</li> <li>□ 농민부담 등 비시장적 이유에 의한 요율인상의 정책적인 개입금지의 정책적인 개입금지</li> <li>□ 보험요율의 탄력성 제고</li> </ul>	중	중	가능
손해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액 평가의 용이성</li> <li>○ 손해평가검증제도, 손해평가인의 객관성</li> <li>○ 손해과장행위 방지대책 등</li> </ul> </li> </ul>	저	중5)	가능
역 선택 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률 제고 등 위험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적절한 보험료 보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제도적 유인장치 마련</li> </ul> </li> <li>□ 보험원리를 이용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li> <li>○ 고위험 계약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등</li> </ul> </li> </ul>	중	고6)	가능

- 4) 풍수해보험은 무상복구비지원제도의 대체제도적 성격이며, 필요자금이 상당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유리함
- 5) 풍수해보험은 소파, 반파, 전파로 손해유형을 단순화하여 정액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손해평가는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유리한 편임
- 6) 풍수해보험은 시군구별 일괄가입방식으로 역선택위험에 대응할 수 있음

□ 우리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2004년 6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ask Force<sup>7)</sup>”를 운영 중임

- 검토중인 제도개선중 국가재보험의 도입, 보험원리에 입각한 요율조정 등은 보험자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미국의 농작물보험 국가재보험은 보험자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보유기준의 순보험영업은 항상 흑자)

<표 6> 미국 농작물보험 원수 및 재보험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별	총 보험료	재보험료	출재율	총 손해액	재보험 회수	손해율		
						원보험	보유	출재
1999	2,312	476	20.6	2,393	1,100	103.5	<b>70.4</b>	231.4
2000	2,536	642	25.3	2,579	1,252	101.7	<b>70.0</b>	194.9
2001	2,978	605	20.3	2,965	1,234	99.6	<b>72.9</b>	204.0
2002	2,909	615	21.1	4,042	1,961	138.9	<b>90.7</b>	318.9
2003	3,434	828	24.1	3,231	1,249	94.1	<b>76.1</b>	150.9
계	14,170	3,166	22.3	15,209	6,796	107.3	<b>76.5</b>	214.7

주) USDA RMA자료

- 기타 T/F에서 검토중인 제도개선 사항은 초과손해 배분기간 단축, 객관적 손해사정, 엄격한 보험상품 운용 및 위험인수 등이 검토되고 있어 사업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음

7) 해당 정부부처, 학계, 손보업계 및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음